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 9.

발 의 자 : 김수민, 김정곤, 김정미,
김춘남, 박교상, 이명희

1. 개정이유

- 시가 직접 운영하여 오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내세워 민간업체에 대행하여 처리함에 따라,
- 환경미화원업무의 무분별한 민간대행과 비정규직화를 방지하여 해당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시가 직접운영
⇒ 신설 (안 제9조제1항)
- 대행업무를 시가 직접운영으로 전환 할 경우,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
⇒ 신설 (안 제9조제7항)
-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직접운영 전환은 2014.1.1.부터 ⇒ 부칙(경과조치)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4. 조례안 : 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

제9조제2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대행업자 준수 사항 및 필요한 사항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가 대행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경우, 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4년 1월 1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 ----- ----- -----있으며, 이 경우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의 제4조제3 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1. ~ 6. (생략)

<신설>

③ ~ ⑥ (생략)

<신설>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행업자 준수 사항
및 필요한 사항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가 대행업무를 직접 운영
으로 전환할 경우, 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 련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